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여비 조례」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「공무원 여비 규정(대통령령)」의 일부 조항이 개정('11. 2. 9.)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(안 제5조)
 - 단, 상한액의 85% 정액지급시 실비정산 면제

라. 참고사항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8조의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「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)」의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,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외 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에 따른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